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기간 1월 18일(수)부터 ~ 1월 26일(목) 오전까지입니다”**

## 2022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2023년 1월 26일(목) 오전까지**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꼭! 제출해 주세요~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  
[2023년 1월 15일(일) 오픈 예정]

- ▶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게 원칙
- ▶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 연말정산 상담 전화 쿼메뉴 ('23. 1. 3.부터 운영) 》**
-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 국번없이 126 → 5 → 1
- ▶ 연말정산 세법상담 : 국번없이 126 → 5 → 2
-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23년 1월 15일(일) 오픈될 예정(2023년 1월 20일(금)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 받으시길 권장)**입니다.※ **확정 소득자료 2023.1.20.(금)**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2020년 연말정산부터 사설 민간 인증서로도 흠택스 접속이 가능)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3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기간 □

2023.1.18.(수)~1.26(목) 오전까지

- ▶ 흠텍스 소득세액공제자료 2023. 1. 15. (일) 오픈 예정
  - ▶ 2023년 1월 20일(금)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 받아 입력 권장  
- 확정소득자료 1월 20일(금)
  - ▶ 2022년 연말정산은 흠텍스에서 다운 받은 PDF파일 업로드로 진행 합니다.

1. 귀속년도 2022년→**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돌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로 저장(비밀번호 없이, **파일명은 2022년 연말정산 본인 성명**)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내역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 |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 7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

\* 귀속년도 2017년 전체선택 선택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용카드 모류 신고센터

보험료 (Insurance) 	의료비 (Medical Expenses)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신용카드 (Credit Card) 	직불카드 (Debit Card)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개인연금저축/면금계좌 (Pension Savings) 	주택자금 (Housing Funds) 	주택마련저축 (Home Purchasing Savings)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Long-term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savings) 	소기업/소상공인 부부부금 (Membership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s) 	기부금 (Donation)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조회 안내 | 6 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

- 자료 조회 및 출력 절차

보험료에서부터 기부금까지  
들보기 클릭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분만 체크

전체선택 선택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의료비 (Medical Expenses)

step 3. 내용확인  
(출력하지 않을 자료는 선택해제)

7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

본 서비스는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세액공제 대상, 공제한 도액 등의 공제요건은 소득·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요건 위반, 부양가족 증복공제(근로자 2인 이상이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는 경우), 자녀양육비 증복공제(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증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등 부당하게 소득·세액 공제를 받으면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DF파일로 다운로드 저장  
ex) 파일명 : 2021년 연말정산(홍길동)

2. 나이스 접속→기본메뉴→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귀속년도 2022년→조회→PDF업로드→ 찾기 [홈텍스에서 다운 받은 PDF파일(2022년 연말정산 홍길동.pdf) 파일 찾기]→등록

### ☞ 파일 업로드시 주의사항 ☞

▶ 업로드시 인적공제내역에 존재하지 않는 자료는 등록 안 되오니 먼저 인적공제내역에 입력 후 등록하십시오.

- 인적공제 내역에 존재하는 대상자만 업로드하여 적용 가능
- 소득공제 받고 싶은 인적공제가 먼저 등록되어 있어야함
- 인적공제 대상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확인 요함

▶ 상세내역(의료비, 기부금,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증권저축) 자료만 개별 내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PDF파일 다운로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한 경우 비밀번호 입력란에 입력해야합니다.

▶ PDF파일업로드 메뉴에서 등록한 파일은 업로드 이후에는 업로드 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없습니다.

▶ 흠텍스 공제자료 외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기부금명세서등록 입력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 번호는 숫자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 750308-1234567 → 7503081234567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시 주의할 점(특히 주택공제 등)

근로자가 주택자금소득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등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단순히 저축불입금액, 원리금상환액을 보여주기만 하는것이지 공제대상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고 서류와 함께 소득공제 신고해야 함

## 증 빙 서 류 제 출

제출서류	대상 및 증빙	방 법
① 소득공제신고서	전교직원 나이스 출력물 서명 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탭→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② 의료비공제신고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③ 기부금공제신고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기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④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연금저축공제등록→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월세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⑤ 주민등록등본	전교직원 제출	☞ 민원24 : <a href="http://www.minwon.go.kr">http://www.minwon.go.kr</a>
⑥ 가족관계증명서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a href="http://efamily.scourt.go.kr">http://efamily.scourt.go.kr</a>
⑦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	전교직원 제출	☞ 국세청홈텍스( <a href="http://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a> ) 인증서 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내역조회→귀속년도(2022년)→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파일명: 2022년 연말정산 본인성명.pdf]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PDF파일도 제출 요함”  ※ 국세청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기부금,교육비등은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본-도장확인)
⑧ 서약서	전교직원 제출	☞ 학교 홈페이지 첨부파일 서약서 양식 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
<b>* 모든 신고서에는 “신고인”란에 성명 기재후 서명 꼭 해주세요.</b>		